[골재채취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5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본조신설 2017.12.19.]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4.30., 타법개정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신설 2012.8.22>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

1. 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기준			
	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		산림, 선별·파쇄 골재	
	모래	자갈	모래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나.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라.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마. 0.08mm체 통과율	5.0% 이하	1.0% 이하	7.0% 이하	1.0% 이하
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53% 이상	55% 이상
사. 마모율		40% 이하		40% 이하
아.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			
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	2.3 ~ 3.1			

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기준	
	모래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2.5 이상	2.5 이상
나.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다. 안정성	15% 이하	12% 이하
라. 편장석률		30% 이하
마. 파쇄면 비율		깨진면 2면 이상: 85% 이상
바. 마모율		표층 35% 이하 기층 40% 이하
사. 모래당량	50% 이상	
아. 잔골재공극률	45% 이상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 대비표

골재채취법(현행) [시행 2018.2.10] [법률 제14850호, 2017.8.9, 일부개정]	골재채취법(개정안)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5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이상----------.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본조신설 2017.12.19]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자[전문개정 2011.8.4] <신 설>	**제49조(벌칙)** ----------. 1. ~ 6. (현행과 같음) 7. ----------자 8.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전문개정 2011.8.4]